공정위,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자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하도급법상의 모든 지연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게 되어 이자제한법을 인용하고 있는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율과 관련된 고시의 제·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하도급법상 일정기간 내에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선급금, 부당감액대금, 관세등 환급액,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지연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종전의 年 18%에서 年 25%로 통일하여 고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선급금 지연지급의 경우와 관세등 환급액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종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 25%)을 적용하고, 부당감액대금 지연지급의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시중실세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이 시중실세금리 수준보다 낮을 경우 대기업들이 하도급법상 각종 대금지급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상향조정하여 고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대금을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6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年 2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와 관세등 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年 2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시중실세금리의 추이에 연동하여 지연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상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다.

先給金등遲延支給時의遲延利子率 告示

제정 1998.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 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5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 1. 13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5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年利 2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9호(하도급대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는 폐지한다.